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수 신 : 각 회원

(경 유)

제 목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 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교통안전공단본부 및 경인지역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실시한 전체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운행기록 자료제출은 종료되었으며, 운행기록자료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
 - 향후 DTG자료제출 범위를 교통사고 다발회사와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운수회사 등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의 자동차로 한정
- 운행기록장치의 다양화에 따른 운행기록추출의 어려움과 일부 제작사의 폐업 및 사업철수로 고장제품에 대한 A/S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강구 중
 - 운수회사 및 운전자의 운행기록 자료제출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CNG정기검사를 수검하는 자동차 또는 업종 특성상 운수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공단직원이 직접 추출하여 제출을 지원할 예정(2015년 5월부터)

별 첨 : 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 안내. 끝.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업무과장 김진성

총무부장 최원배

전무이사 염상빈

협조자

시행 경기화협-제119호 (2015. 3. 23.)

접수

우 440-8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 4층

www.kgta.or.kr

전화 031-243-5221

전송 031-251-9770 / jsk7276@nate.com

“직인생략”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우:601-836/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0-7번지/ 전화:(051)462-5551-3/전송:(051)464-5589/ 담당:업무과
홈페이지: www.busanta.or.kr

문서번호 부화 제 123 호

시행일자 2015. 3. 24.

경 유

수 신 전 회원사

선			지	
점	일자·시각		결	
수	번 호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 목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 자료제출 등 관련 사항 통보

1. 화련 제107호(2015.3.23) 관련입니다.

2.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 자료제출 등과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도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0. '14년 10월부터 '15년 3월까지 실시한 전체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운행기록 자료제출은 종료되었으며, 운행기록자료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요청은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

- 향후 DTG자료제출 범위를 교통사고 다발회사와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운수회사 등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의 자동차로 한정

0. 운행기록장치의 다양화에 따른 운행기록추출의 어려움과 일부 제작사의 폐업 및 사업철수로 고장제품에 대한 A/S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강구 중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공단직원이 직접 추출하여 제출을 지원할 예정('15년 5월부터). 끝.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 사 장 신 한 춘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0)138-7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5층(신천동,교통회관) ☎(02)415-3011 FAX(02)421-3562

문서번호 : 서화2015- 96 호

시행일자 : 2015년 03 월 23 일

(경 유)

수 신 : 전협회원사

참 조 :

선			지	
결			시	
점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관	
담	당	자	람	

제 목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 자료제출 등 관련 사항 안내

1. 연합회 화련 제107호(2015.03.23.)와 관련입니다.

2. 그동안 우리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사업용 디지털 운행기록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민원제기와 건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요내용

- '14년 10월부터 '15년 3월까지 실시한 운행기록 자료제출은 종료되었으며, 운행기록자료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계획
- 향후 DIG자료제출 범위를 교통사고 다발회사와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운수회사 등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의 자동차로 한정
- 운행기록장치 자료 추출에 대한 어려움과 제작사 폐업 및 사업철수로 고장제품에 대한 A/S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강구 중
- 자료제출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하여 공단직원이 직접 추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15년 5월부터)

[요약]

- ① 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 종료(과태료 부과 금지) - 사고다발업체 또는 사고차량에 대해서만 요청 예정
- ② '15년 5월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공단직원이 직접 자료 추출 및 제출 계획

붙.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전

